⦁적격 합병･분할에 따른 합병･분할차익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 합병차익 중 의제배당대상 (㉠+㉡+㉢, 합병차익 한도) 분할차익 중 의제배당대상 (㉠+㉡, 분할차익 한도) ㉠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㉠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㉡ 피합병법인의 자본잉여금 중 법인세법§16①(2)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㉡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\*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함 ㉢ 피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･ 자본전입 순서 : 합병차익 또는 분할차익의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대상 외의 금액을 먼저 전입 ☞ 2019.2.12. 이후 합병･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자본전입하는 분부터 적용